2026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배점 분석

법	협정	예시형 사례	실제형 사례
70	0	30	0

1 방법	2/3 방법	4 방법	5 방법	6 방법
30	5	25	20	20

			법	판단
문제 1 (30점)		1방법(생산지원비, 운임, 환율)		
8점	물음 1	생산지원비용 설명 및 판단	4	4
12점	물음 2	운임·운송비용 산출 (§30①⑥)	6	6
5점	물음 3	통상운임 특정물품 근거	5	
5점	물음 4	제1방법 과세가격 산출+환율		5
			15	15

관세평가

【문제 1】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 거래내용 >

○ 국내 수입자 K사는 미국 소재 수출자(제조자) S사로부터 액체 화학원료를 다음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 Unit Price: USD 2,300/ton
- Quantity: 200ton
- Incoterms: FOB NewYork Port
- Payment: T/T(총 금액의 50%는 출항일에, 잔금 50%는 입항일에 지급)

○ K사는 위 거래조건의 액체 화학원료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다음의 요소를 S사에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 액체 화학원료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화학적 촉진제(수입물품에 잔존하지는 않으나, 생산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K사가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특허기술로 생산되었다): 10,000,000원
- 액체 화학원료 생산에 필요한 특허기술(일본 국적 엔지니어가 서울 소재 K사 연구소에서 완성한 기술로 K사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 30,000,000원

○ 한편, K사는 화물 운반을 위하여 탱크컨테이너(ISO tank)를 유럽 소재 임대회사로부터 별도로 임차하여 비용을 지급하였다. 운송은 항해용선계약에 따르고, 운임 등 운송관련 비용은 S사에 지급하는 금액과는 별도로 모두 K사가 부담한다. 선사(포워더), 임대회사, 국내운송사가 발급한 비용 명세는 다음과 같다.

연번	명세서 항목	금액(원)
①	기본 해상운임(선적항 → 수입항) * 수입항 하역비 2,1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구분 기재됨	45,000,000
②	유류할증료(Bunker Adjustment Factor)	3,000,000
③	공선회조료(Dead Freight)	2,200,000
④	탱크컨테이너(ISO tank) 임차료	20,000,000
⑤	선적자재비・선박개장비(Stowage & Lashing)	2,500,000
⑥	선적항 체선료(Demurrage at Loading Port)	4,600,000
⑦	통화할증료(Currency Adjustment Factor)	1,000,000
⑧	수입항 체선료(Demurrage at Discharge Port)	3,700,000
⑨	수입항 도선료・예선료 * 본선이 부두에 접안하여 양륙준비를 완료하기 전에 발생됨	1,500,000
⑩	내륙운송료(수입항 → K사 국내공장)	4,830,000

○ 생산지원요소는 상기의 최초 수입 건에 전액 가산하기로 한다.

○ 해당 용선계약에 따라 항해 중 유가변동에 따른 운송인의 손실 보전비용인 유류할증료, 항해 중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보전비용인 통화할증료는 K사가 선사(포워더)에 지급한다.

○ 선박의 출항일, 입항일 및 입항전 수입신고일은 다음과 같다.
- 출항일: 2026. 5. 8.(금)
- 입항전 수입신고일: 2026. 6. 6.(토)
- 입항일: 2026. 6. 8.(월)

○ 관세법령에 따른 과세환율은 다음과 같다.

적용기간	원/USD
2026. 5. 3.(일) ~ 5. 9.(토)	1,450.00
2026. 5. 31.(일) ~ 6. 6.(토)	1,550.00
2026. 6. 7.(일) ~ 6. 13.(토)	1,500.00

※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물음 1) 관세평가 목적상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는 생산지원비용에 대해 기술하고, 위 거래내용에서 제시된 각 생산지원요소의 가산 여부에 관하여 관세평가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8점)

물음 2) 위 명세의 각 항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정해야 할 운임 및 운송관련 비용의 산출과정과 그 근거를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12점)

물음 3) 운임은 운임명세서 등 서류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물품의 경우 선박회사 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물품의 운임으로 산출할 수 있다. 통상의 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특정물품과 그 법적 근거를 기술하시오. (5점)

물음 4) 위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제1방법에 따른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실제지급금액, 가산금액, 공제금액의 3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하고, 최종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 (5점)

법 판단

문제 2 (20점) 6방법(중고물품)

15점	물음 1	중고물품 과세가격 결정 (시행규칙§7의5, 고시§41)	15
5점	물음 2	중고 승용차 과세가격 산출	5

【문제 2】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거래내용>

○ 국내 수입자 A는 독일에서 아래와 같은 중고 승용차를 수입하였다.
- 독일산 승용차 신차가격: 1억 5천만원
- 차량용도: 자가용
- 최초 등록일: 2024. 1. 1. 2년 5개월+12일
- 수입신고일: 2026. 6. 13.

○ 다음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의 일부이다.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단위 : %)

차종구분		내용연수	경과연수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승용차 및 화물 자동차	비영업용	12년	0	100.0	97.50	95.00	92.50	90.00	87.50	85.00	83.63	82.27	80.90	79.53	78.17
			1	76.80	75.82	74.83	73.85	72.87	71.88	70.90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00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0	53.48	52.67	51.85	51.03	50.22	49.40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0	43.73	42.97	42.20	41.43	40.67	39.90	39.13	38.37	37.60	36.83	36.07
			5	35.30	34.58	33.85	33.13	32.40	31.68	30.95	30.23	29.50	28.78	28.05	27.33
			6	26.60	25.95	25.30	24.65	24.00	23.35	22.70	22.05	21.40	20.75	20.10	19.45
			7	18.80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0	13.03	12.75	12.48	12.20	11.93	11.65	11.38	11.10	10.83	10.55	10.28
			9	10.00	9.92	9.83	9.75	9.67	9.58	9.50	9.42	9.33	9.25	9.17	9.08
			10	9.00	8.92	8.83	8.75	8.67	8.58	8.50	8.42	8.33	8.25	8.17	8.08
			11	8.00	7.92	7.83	7.75	7.67	7.58	7.50	7.42	7.33	7.25	7.17	7.08
			12	7.00											
	영업용	6년	0	100.0	97.00	94.00	91.00	88.00	85.00	82.00	77.70	73.40	69.10	64.80	60.50
			1	56.20	55.38	54.57	53.75	52.93	52.12	51.30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0	45.17	43.93	42.70	41.47	40.23	39.00	37.77	36.53	35.30	34.07	32.83
			3	31.60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0	20.93	20.37	19.80	19.23	18.67	18.10	17.53	16.97	16.40	15.83	15.27
			5	14.70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00											

※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규7조의5(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른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에 따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해외로부터 수입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하여가치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합리적인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다.

고41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규칙 제7조의5제2항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따른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 :**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 :**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 :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버림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③ 규칙 제7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K

물음 1) ①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5, ②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각각 기술하시오. (15점)

물음 2) 국내 수입자 A가 수입한 중고 승용차의 과세가격 산출과정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 (5점)

법 판단

문제 3 (30점) 2/3방법, 4방법

7점	물음 1	동종·동질 / 유사 / 동종·동류 개념	7
8점	물음 2	국내판매 단위가격 의미·산출방법	8
5점	물음 3	국내판매가격 산정 고려사항(고시)	5
10점	물음 4	산출대상 품목군 결정(고시§33)	10

【문제 3】 다음의 각 물음에 답하시오. (30점)

물음 1) 관세법령상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관하여 기술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7점)

물음 2)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의 의미, 국내판매가격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물품의 순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산출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8점)

물음 3)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국내판매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려사항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 4) 세관장이 관세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 선정시,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33조에서 규정한 "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10점)

KK

영25조(동종·동질물품의 범위)

①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동종·동질물품"이란

영26조(유사물품의 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유사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아니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대체사용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 비슷한 특성과 비슷한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 물품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종·동질물품"은 "유사물품"으로 본다.

【예해1.1(4)】 수입국내 수행된 기설고공다 결함/반영한 물품은 동/유물품 용어에 포함되지 X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물리적 특성, 품질 및 소비자 등의 평판을 포함한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외양에 경미한 차이가 있을 뿐 그 밖의 모든 면에서 동일한 물품을 포함)을 말한다.

고33조(산출대상 품목군 등의 결정)

① 세관장이 영 제27조제6항에 따른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도별로 결정한 납세의무자의 제4방법 적용대상 수입물품(이하 "산출대상 품목군"이라 한다)별로 산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
2. 해당 수입물품 및 관련 산업의 특성
3. 납세의무자의 취급품목, 국내판매형태, 사업부문 및 회계자료의 구분 여부 등 사업의 내용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출대상 품목군과 동종·동류 물품의 품목번호의 범위(이하 "동종·동류 품목번호"라 한다)를 연도별로 결정하여야 한다.
1. 산출대상 품목군의 10단위부터 2단위까지의 품목번호 중 대표성이 있는 품목번호. 다만, 품목이 다양한 경우 여러 품목번호 단위로 결정할 수 있다.
2. 산출대상 품목군의 전체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수입비중이 80% 이상인 품목번호. 다만, 제34조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산업부문의 업체가 선정될 우려가 있는 품목번호 등은 제외할 수 있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영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란 수입 후 최초의 거래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가격은 이를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와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Related Party)
2. **최초거래의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18조 각호의 물품 및 용역을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거래에 관련하여 사용하도록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경우 (Assist)

고31조(제4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수입물품)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 법 제33조제2항의 경우
2. 영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수입신고일부터 90일 이내 판매되는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제34조에 따른 방법으로 비교대상업체가 2개 이상 선정되지 않는 경우
4. 제36조에 따라 영 제27조제5항제1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납세의무자 비율"이라 한다)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고32조(법 제33조에 따른 금액 산정 시 고려사항)

①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등)을 공제하고, 매출환입된 판매수량은 단위가격을 산정할 때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②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자가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의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판매되는 단위가격은 당해 물품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수입신고일의 가격과 가격변동이 거의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중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다만, 수입신고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에 판매되는 가격을 제외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은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④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을 말한다. +【한5주해】 해당물품의 수출국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물품도 포함	③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고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관장은 매 신고건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33조제3항 각 호의 금액(이하 "공제금액"이라 한다)을 계산하는 대신에 영 제3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금액의 비율(이하 "공제율"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⑤ 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동종·동류비율")의 100분의 120 이하인 경우** :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2. 제1호 외의 경우: 동종·동류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	④ 제3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규칙 제7조의9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권고9.1】 원.상관세는 관세 및 기타 내국세의 항목으로 공제되어야.	⑥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을 선정하고이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동종·동류비율 및 그 산출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했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 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을 다시 산출할 수 있다. ⑨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⑩ 법 제33조제2항에서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란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을 말한다.	

			법	판단
문제 4 (20점)				5방법
5점	물음 1	관세법§34 산정가격 방법	5	
10점	물음 2	§34 과세가격 산출		10
5점	물음 3	시행령§28 산정가격 기초 규정	5	

【문제 4】 다음 거래내용에 기초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20점)

<거래내용>

국내 수입자 K사는 미국 제조업체 M사로부터 특수보안장비를 수입하였다. K사와 M사는 상호 법률상 동업자 관계이다. 우리나라 세관 당국은 K사가 수입한 특수보안장비의 과세가격 적정성에 대한 세액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K사와 M사 간의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쳐 수입신고한 거래가격은 배제되었다. 한편, 해당 특수보안장비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2조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적용요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K사는 세관 당국에 관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방법을 우선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M사는 세관 당국에 관련 자료 제출을 협조하기로 하였다.

○ K사의 특수보안장비 수입과 관련된 거래조건 및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다.
- Unit Price: USD 100/ea
- Quantity: 1,000ea
- Incoterms: CIF Incheon Airport
- 미국 내 발생한 내륙운송비: USD 500
-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임 및 보험료: USD 3,000

○ M사의 협조로 세관 당국에 제출한 손익계산서의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출수익: USD 20,000,000
- 매출원가: USD 12,000,000
- 판매비와 관리비: USD 5,000,000
- 영업이익: USD 3,000,000

Mark-up rate = 8/12 = 66.67%

○ M사가 제출한 특수보안장비의 제조원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직접재료비: USD 40/ea
- 직접노무비: USD 10/ea
- 제조간접비: USD 2/ea

40+10+2 = 52

2026년도 제43회 관세사 2차 3교시 (6 - 5)

○ 우리나라 세관 당국은 K사가 해당 특수보안장비의 생산을 위해 국내에서 수행된 디자인(디자인 개발비용: USD 10,000)을 M사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K사와 M사의 거래조건상 해당 디자인 비용에 대해 M사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 내 동종물품·동종산업군의 제조사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전체 생산 관련 비용의 80%로 확인되었다.
○ 해당물품 수입통관시 적용된 과세환율 : 1,500원/USD

※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내용 외에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물음 1) 관세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하여 기술하시오. (5점)

물음 2) 위 거래내용을 바탕으로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과세가격의 산출과정과 그 근거를 기술하고, 과세가격을 산출하시오. (10점)

물음 3)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기술하시오. (5점)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생산자가 생산국에서)

【협정 6조에대한 주해】
해당 "비용 또는 그 가격"에는 아래의 요소를 포함
① 포장비용
② 용기비용
③ 생산지원비용 (단, 국내에서 개발된 용역의 생산자가 부담한 경우에만 포함)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52*1.8)*1000+3500]*1500 = 145,650,000원